

수원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1나910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운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트

담당변호사 허규현

변 론 종 결 2023. 4. 18.

판 결 선 고 2023. 6. 20.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단511958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 2019. 10.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112,620,09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2,620,0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4행 라.항 중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31.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를 ‘피고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31.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로 고친다.

2. 사해행위 취소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3면 제13행부터 제4면 제12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B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은 3자간 명의신탁에 기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고, 계약명의신탁관계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E이 피고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다.

만약 이 사건 각 부동산이 B의 책임재산이라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B의 채권·채무 상태나 재산상태를 알 수 없었기에 이 사건 처분행위로 B의 책임재산이 감소되리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

2)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1, 12호증, 을 제1, 3 내지 9, 17 내지 19, 21, 22,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피고는 2011. 11. 28.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차임은 월 250만 원, 기간은 2011. 12. 20.부터 2013. 12. 20.까지(24개월)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E에게 2011. 11. 28. 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12. 20. 총 3회에 걸쳐 1,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② 피고는 2015. 12. 7. E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 명의의 기업은행 은행계좌에서 2015. 12. 8. E 앞으로 3,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 ③ 피고는 2016. 4. 14. 액면금액 1억 8,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받았다.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일부로 1억 9,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2016. 4. 16.자 영수증(을 제18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영수증의 수취인은 'B'으로 기재되어 있다.
-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4.자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1. 25.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 ⑤ B은 2017. 1. 25.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4억 9,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3,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대출금에 관한 C조합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7. 1. 25. 대출실행으로 4억 9,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387,920,667원이 대출상환 등으로, 나머지 102,079,314원이 비용처리 등으로 전부 이체되었다.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였던

E의 H조합에 관한 각 대출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위 부동산에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⑥ 한편, 피고가 제출한 E 명의의 2020. 6. 20.자 사실확인서(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B과 체결한 매매계약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실제 매수자인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5. 12. 8.경 매수인을 B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매매대금 6억 8,000만 원 중 계약금 8,000만 원은 2015. 12. 7. 계좌이체 방식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8. 현금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다음 나머지 2,000만 원은 기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반환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지급받았다. 잔금 중 1억 8,000만 원은 수표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4억 2,000만 원은 B 명의의 신용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려워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가 B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제1심에서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6억 8,0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실제로는 7억 7,000만 원이었고, 다만 계약서에는 실제 금액보다 낮게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주장은 위에서 본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부합하지 않고, E과 B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5. 12. 7.자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바도 없어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2) D 명의의 기업은행 은행계좌에서 2015. 12. 8. E 앞으로 3,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D의 운영형태 및 수익관리 등에 관하여 밝혀진 바가 없어 위 사실만으로 위 돈을 피고가 E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 E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6. 1. 21.에도 D 명의의 같은 계좌에서 E 앞으로 14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을 제17호증), 위

3,000만 원이 피고 주장대로 매매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 잔금 중 3억 5,000만 원 상당은 E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피고가 B 명의로 F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가 2017. 1. 25. C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피담보채무 및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조합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7. 1. 25. 대출실행으로 입금된 4억 9,000만 원은 전부 E의 근저당권부 채무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대출금이 F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그 밖에 피고는 B와 사이에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증거로 B과의 대화녹음 및 녹취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대화는 단편적인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의 주장대로 B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명의는 B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도 동업자로서(갑 제12, 16호증에 의하면 B은 피고와 'D'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B 명의의 기업운전자금 대출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인지 분명하지 않아 피고 주장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5)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 비용, 세금 등을 피고가 전부 부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도, D의 운영형태, 계좌관리를 포함한 수익과 비용 등 자금관리 형태에 관한 자료가 없어 을 제11 내지 14호증을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이자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고, 만약 피고가 이를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시기,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 주장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바로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3) 선의 수익자 주장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B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범위

가. 원상회복의 방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8면 제3행부터 제14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한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C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변론종결일 당시의 가액은 770,000,000원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539,461,05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면 그 차액은 230,538,945원이고, 그 중 99/100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228,233,555원이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3. 4. 18.까지의 피보전채권액은 112,620,097원(= 대위변제금 85,363,602원 + 확정지연손해금 76원 + 법적절차비용 431,200원 + 2020. 2. 27.부터 2023. 4. 18.까지 지연손해금 26,825,219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잔여 가치가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피보전채권액 112,620,09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12,620,09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유재광, 판사 김초하, 판사 전민정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창고용지 645㎡

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도로명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위 지상

일반철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1층 창고 98㎡

끝.

